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모·시설 기준 및
식사제공에 관한 특례 부여〉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55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구감소지역 한정에 관한 사항	3
2.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모·시설 기준 특례	6
3. 농어촌민박의 식사제공 특례	18
4. 논의 필요 사항	25
【참고 1】 농어촌민박제도 개요	26
【참고 2】 농어촌민박제도 개정경과	27
【참고 3】 숙박업종 분류 및 특징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한정에 관한 사항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①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규제 완화 및 ② 투숙객 대상 식사제공 규제 완화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생략)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 ----- 1.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

현행	개정안
5.6. (생략)	<u>큰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하여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5.6.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의견

농어촌민박은 다수 농촌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전국 농어촌 민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24. 7. 3. 발표한 바 있음.

다. 검토의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24년 8월 현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위 치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2.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민박 34,468개소 중 인구감소지역 내에 위치한 농어촌민박은 16,789개소로 약 48.7%를 차지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 현황】

(단위: 개소수)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34,468	138	48	1,335	6	32	292	24	3,726	6,434	1,543	2,112	1,275	3,421	3,891	4,165	6,026
인구 감소지역	16,789	-	35	1,326	-	-	-	-	1,170	4,099	1,208	1,723	966	2,204	1,776	2,282	-
비율	48.7	0	72.9	99.3	0	0	0	0	31.4	63.7	78.3	81.6	7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3.제출 ('24.10.23. 기준)

개정안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멸위험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계인구¹⁾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인구감소지역 외에 있는 농어촌민박이 전체 민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농어촌민박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24. 7. 3. 발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특정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의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일, 학업, 관광, 문화 활동 등을 이유로 자주 방문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포함함.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기보다 전체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를 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내 농촌 분포】

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	관할 읍·면	
		개수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8	1.0
인천	강화군, 옹진군	20	2.3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가평군, 연천군	16	1.8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81	9.2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58	6.6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103	11.8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20	13.6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82	20.8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53	17.5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35	15.4
제주	-	-	-
총계	89개	876	100

※ 청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촌(읍·면)지역이 없는 시·군·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2.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 기준 특례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 제2조제16호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농어촌민박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1조제2항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포함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시설기준을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 -----.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u>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농어촌민박사업이 전국 농어촌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규모, 시설기준 사항은 인구감소 지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협회는 농어촌민박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면적 기준 확대(기존 230m²→400m²)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민박 현황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로 의견이 나뉘나, 규모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완화를 요구

구분	세부의견
주택규모	.완화 주택 전체 연면적이 아닌 객실 면적 기준 적용 .완화 연면적 300㎡ 미만까지 허용 .완화 기준 확대 필요 .강화 1년 또는 3년 이내 용도변경되지 않은 주택으로 대상 한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3.제출 ('24.10.23. 기준)

다. 검토의견

1) 면적기준 완화

최근 농어촌 자연경관과 휴식을 경험하려는 도시민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농어촌민박 추이('10년~'23년 기준)]

(단위: 개소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소수	18,858	20,235	21,971	24,122	25,196	24,246	25,032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소수	26,578	27,631	28,551	29,029	29,308	30,866	33,0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4.10.10. 제출

[시도별 농어촌민박 현황('23년 말 기준)]

(단위: 개소수)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124	43	1,303	7	26	291	18	3,534	
비율	0.4	0.1	4.0	0.0	0.1	0.9	0.0	10.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6,213	1,475	2,016	1,222	3,389	3,627	4,028	5,777	33,093
비율	18.8	4.5	6.1	3.7	10.2	10.9	12.2	17.4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4.10.10.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은 숙박시설의 설치 및 영업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²⁾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업임.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보다 완화된 「농어촌정비법」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과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 ⑨ (생략)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은 농어촌민박 규모기준을 주택연면적 230m²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생 략)

이처럼 농어촌민박의 규모가 230m²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넓은 독채에서 따로 묵으려는 관광객 수요의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바베큐시설·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원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면적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완화 요구 사례】

□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 농어촌민박 규모기준 확대 및 식사 허용 관련 요구
 - '23.6월부터 '24.1월까지 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규제 개선 발표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에 대한 심의 및 제도개선 의결('24.2월)

□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 규모기준 완화 및 식사제공 허용 등 다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8. 제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농어촌민박이 당초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농림지역 등에서 기존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숙박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비교】

구분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시설규모	주택 <u>연면적 230㎡미만</u>	<u>제한없음</u>
규제	위생관리, 시설요건, 소방안전설비, 건축물기준 사업자 등록·관리 등 <u>완화</u>	위생관리, 시설요건, 소방안전설비, 건축물기준 사업자 등록·관리 등 <u>엄격</u>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4.10.10. 제출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면적규제를 완화할 경우, ①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 ② 농촌 지역주민의 주거여건 및 농촌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 ③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기존 소규모 농어촌민박과의 경쟁 및 격차 발생할 가능성 ④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함.

이에 농가소득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 관광객 수요 충족 등의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주여건악화,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등 규제유지 필요성에 대한 비교형량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 면적기준 완화 및 유지 근거】

구분	규제완화 필요	규제유지 필요
경제적 측면	· 유흥자원활성화를 통한 농가 창출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 기존 소규모 농어촌민박과의 경쟁 · 기존 숙박업계의 규제 역차별 · 도시민박 등의 형평성 문제 제기
사회적 측면	· 소비자 선택 및 체험 다양화	· 인근 거주민 정주환경 악화 ·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촌경제과. 2024.10.10. 제출

한편,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농어촌민박의 규모를 규정하는 경우라도 최대 객실수를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어촌민박의 과도한 대규모화를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 조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시설기준 완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규모 뿐 아니라 시설 기준까지도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과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18년 발생한 강릉 농어촌민박 일산화가스 누출 사망사고³⁾ 이후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 기준이 강화됨.

3)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농어촌민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시행규칙은 [별표3] 에서 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② 위생적 조식 제공을 위한 시설 ③ 가스누출 예방시설과 관련된 시설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생 략)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 어 촌 민 박 사 업	기본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도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관련규정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 취급처 안전시설	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의 식사제공 특례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 제86조의2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식사제공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4. ----- ----- -----,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하여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농어촌민박사업이 전국 농어촌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식사제공 등 사항은 인구감소 지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식약처

식약처는 식품접객업 의제처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제로 농어촌민박의 조식 이외 식사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3) 지방자치단체

농어촌민박 조식규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유지·강화 의견이 나뉘고 있음.

구분	세부의견
식사제공	. 유지 중·석식 모두 허용 시 음식점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어 현행 기준 유지 . 완화 일반음식점 허가 받을 시 식사 제공 가능하게 허용 . 강화 조식도 미제공으로 개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3.제출 ('24.10.23. 기준)

4)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협회는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식사제공 규제가 완화 될 경우 숙박업(숙박업중앙회)·요식업(식품산업협회)의 사례와 같이 협회가 주관하여 안전교육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제16호와 제86조의2제4호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만을 제공할 수 있음.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15. 1. 6.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추가되어 지금까지 유지되는 규정으로서, 농어촌민박의 투숙객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위해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을 반영하되,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규모 음식점업과 다르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엄격한 조리시설 기준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식’으로 한정 한 것임.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업 비교】

구분	농어촌민박사업	일반음식점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식품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에서만 가능
제공가능 식사	<u>조식만 가능</u>	<u>제한없음</u>
시설규모	주택 연면적 230㎡미만	제한없음
규제	시설기준, 위생관리, 식자재·조리기준, 청결·소독, 행정처분 및 점검 등 <u>완화</u>	시설기준, 위생관리, 식자재·조리기준, 청결·소독, 행정처분 및 점검 등 <u>엄격</u>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3.제출 ('24.10.23. 기준)

그런데 최근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농어촌민박 투숙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식 이외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완화 요구 사례】

□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 농어촌민박 규모기준 확대 및 식사 허용 관련 요구
 - '23.6월부터 '24.1월까지 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규제 개선 발표

□ (중기부) 기업현장 규제애로 중점정비 과제

-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및 승계 허용, 조식 외 식사 제공, 신고요건 완화 등 다수

□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 규모기준 완화 및 식사제공 허용 등 다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8. 제출

다만, 농어촌민박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같은 시설기준, 위생관리, 식자재·조리기준, 청결·소독, 행정처분 및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음식제공에 따른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농어촌민박 주변의 음식점업 지역 상권과의 충돌문제 및 음식점업과의 형평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의 경우 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업 허가와 건축물 용도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민박 조식제한 완화 및 유지 근거】

구분	규제완화 필요	규제유지 필요
경제적 측면	· 유희자원활성화를 통한 농가 창출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 도시민박업 등과의 형평문제 (도시민박업은 조식이외의 식사제공 가능)	· 일반음식점업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 (엄격한 규제, 행정처분, 점검) · 숙박업자와의 형평문제 (숙박업자는 룸서비스 제공하려면 휴게음식점업 허가 필요,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 지역상권과의 충돌 문제 제기
사회적 측면	· 투숙객 편의 강화	· 위생·품질상의 문제 발생 가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8. 제출

다만, 농어촌민박과 유사한 도시민박업의 경우 조식 이외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농어촌민박은 일반음식점업과 달리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비교】

구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의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 등을 제공하는 업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일반·취사시설 제외 생활·취사시설 포함
절차	지자체 등록	지자체 신고	지자체 신고
도입	2012년	1995년	1961년(당시, 숙박업법)
의무 사항	- 건물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 건물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위생관리기준(객실·침구, 욕실, 주방, 환기 등) 준수 - 소화기 구비·관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 연 1회 서비스·안전교육	-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 혹은 공중위생 영업 외 용도 시설·설비와 분리 - 위생관리기준(객실·침구, 욕실, 환기, 조명 등) 준수 - 위생서비스 준수 평가(2년 주기)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 연 1회 위생교육
시설 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과세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업종: 숙박영업) • 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 • 부가가치세(연 매출액 8,0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신고·납부 年2→1회, ▲年4,800만원이하 면제 ▲세율 : 부가가치세율(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20%)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 소득세(개인사업자) or 법인세(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대상	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지역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상 (준)농어촌 지역은 제외	「농어촌정비법」상 (준)농어촌지역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생활숙박업,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밖), 상업지역
일수	365일	365일	365일
거주	○	○	X
현황	2,708('23년말 기준)	33,093	29,72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10.28. 제출

한편, 식사 제공을 허용하더라도,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조리시설 기준과 사업자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논의 필요 사항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상기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농어촌민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농어촌민박제도 개요

□ 주요내용

- (개념) 숙박시설 설치 및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주택에서 예외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업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 「건축법」상 '주거시설'인 주택에서 숙박영업 허용,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에서 숙박영업 허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은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함

- (시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소방 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

- (대상) 농어촌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전입신고 必)

* 신고자가 단독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연도	2010	2013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민박수	18,858	24,122	25,032	28,551	29,029	29,308	30,866	33,093

* '23년 기준 농어촌민박 33,093개소, 일반 숙박업 29,723개소, 관광펜션업 786개소

** 강원(6,213개소, 19%), 제주(5,777, 17), 경남(4,028, 12), 경북(3,627, 11), 경기(3,534, 11), 전남(3,389, 10) 順

※ 농어촌민박 실태조사 결과('23년 전국 상위 20개 시군 18,509개소 대상)

① 객실수

구분	합계	1~3개	4~6개	7~9개	10개 이상	확인 불가
신고	18,509 (100%)	11,292 (61%)	5,642 (31%)	971 (5%)	39 (0.2%)	565 (3%)
실운영	18,509 (100%)	10,276 (56%)	6,044 (33%)	1,675 (9%)	56 (0.3%)	458 (2%)

② 신고 면적

합계	80㎡이하	80~160㎡	160~230㎡	230~400㎡	400㎡초과	확인 불가
18,509 (100%)	2,420 (13%)	6,784 (37%)	8,040 (44%)	723 (4%)	259 (1%)	283 (2%)

참고 2

농어촌민박제도 개정 경과

□ 규모기준

연도(시행일)	자 격	제 도	규모기준	시설종류
'94.12.22 제정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민	지정제도	농어가 5호 이상	농어촌주택
'99.2.5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민	지정제도 폐지 (자유업)	농어가 5호 이상 (객실 ⑨7실 이하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 제외, '99.2.8)	농어촌주택
'02.12.26	농어촌지역 주민	자유업	농어가 5호이상 규정 삭제('03.1.16)	규정없음
'05.8.4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지정제도 도입	②주택 연면적 150㎡ [※] 미만 (기존 7실 이하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08.2.4 * 시행규칙 개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지정제도	③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09.6.9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신고제도	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 거주요건

- 도시민 투기 수요 억제, 주소지 임시 이동 등 편법 방지 등을 위한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권고(‘13년 권익위 조사, ‘17년 국조실 정부합동감사)
 - * 농어촌민박은 건축법상 거주용인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실거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
- **신고 요건 강화**를 통해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20.2월)
 - * ‘18년 제주도 민박 살해사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장 안전시설과 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허용(당초 임차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까지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허용)

참고 3

숙박업종 분류 및 특징

법률(소관부처)	숙박업 명칭			예시 및 특징	등급 관리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제)	호텔업 (2,343)	관광호텔업	- 객실 30실 이상, 조식 제공 - 객실별 욕실 및 샤워실 구비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 의무 (3년 주기) - 관광호텔업은 법률에 따라 5개 등급 구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위탁 수행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 구조물, 고정 선박	
			한국전통호텔업	- 한옥양식 및 전통요리 제공	
			의료관광호텔업	-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 신청 가능
			소형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텔 내 공동취사 등 취사 가능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에게 적합한 편의시설 구비	
	휴양콘도미니엄업(248)		- 리조트,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708)		- 게스트하우스 ①건물의 연면적 230㎡미만 ②외국어 안내서비스 가능 ③실거주 의무 등	-
		야영장업(3,605)		- 일반야영장/자동차야영장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 신청 가능
관광객 편의시설업 (지정제)		관광펜션업(펜션) (786)		- 객실 30실 이하, 3층이하 - 취사 및 숙박시설 설치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중 한 종류 이상 이용시설	-
		한옥체험업(2,000)		- 한옥스테이 ①전입신고/실거주 불필요 ②주택수 불포함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고제, 29,723)	일반숙박업		- 취사 X - 일반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 객실별 욕실 샤워기 환기시설 등	-
		생활숙박업		- 취사 O - 레지던스, 발코니가능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제, 33,093)			- 취사 O, 조식 제공 가능 ①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 건축물 연면적 230㎡미만 ②실거주 의무 등	도농교류법에 따라 평가 및 등급결정 (자율)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업	허가제 등록제		- 학생들이 단체로 숙박 가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산림청)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승인제)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등	-
제주특별법 (제주자치도)	휴양펜션업			- 등록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고시원			- 신고제	전입신고 가능, 주택임대차신고 필요 (60일 또는 30만원 이상)

* 숙박업 명칭의 괄호 내 숫자는 '23년 기준 신고·등록된 업소의 개수임